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44호 2015. 11. 23. (월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89호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090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하동군 조례 제2091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하동군 조례 제2092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하동군 조례 제2093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하동군 조례 제2094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25
○	하동군 조례 제2095호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하동군 조례 제2096호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9
○	하동군 조례 제2097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하동군 조례 제2098호	하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37호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규칙	87
---	---------------	----------------------------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8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03차)	89
---	------------------	------------------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944호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92
○	하동군 공고 제2015-945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96
○	하동군 공고 제2015-955호	국도59호선 하동옥중 ~ 산청시천 미포장도로 정비공사	101
○	하동군 공고 제2015-962호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05
○	하동군 공고 제2015-963호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재정안 입법예고	114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5-15호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2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44호 2015. 11. 23. (월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89호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090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하동군 조례 제2091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하동군 조례 제2092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하동군 조례 제2093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하동군 조례 제2094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25
○	하동군 조례 제2095호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하동군 조례 제2096호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9
○	하동군 조례 제2097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하동군 조례 제2098호	하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37호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규칙	87
---	---------------	----------------------------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8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03차)	89
---	------------------	------------------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944호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92
○	하동군 공고 제2015-945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96
○	하동군 공고 제2015-955호	국도59호선 하동옥중 ~ 산청시천 미포장도로 정비공사	101
○	하동군 공고 제2015-962호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05
○	하동군 공고 제2015-963호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재정안 입법예고	114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5-15호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2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444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89호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① 군수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람권을 발행 할 수 있다.

제20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동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9조 관련)

1. 시설사용료

구분 시설별	단 위	기 준	사 용 료 (원)		비 고
			평 일	토·일·공휴일	
대공연장 (773석)	1 일	09:00 ~ 22:00	100,000	120,000	
	오 전	09:00 ~ 12:00	40,000	50,000	
	오 후	13:00 ~ 17:00	50,000	60,000	
	야 간	18:00 ~ 22:00	60,000	70,000	
소공연장 (92평)	1 일	09:00 ~ 22:00	50,000	60,000	
	오 전	09:00 ~ 12:00	20,000	30,000	
	오 후	13:00 ~ 17:00	20,000	30,000	
	야 간	18:00 ~ 22:00	30,000	40,000	
전 시 실 (74평)	1 일 (전체)	09:00 ~ 22:00	30,000	40,000	조명시설 등
	1 일 (부분)		20,000	30,000	
회 의 실 (15평)	1 회	4시간 기준	20,000	30,000	

2.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부속설비명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냉·난방	대공연장	1회(4시간)	70,000	
	소공연장	1회(4시간)	30,000	
	전 시 실	1회(4시간)	3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1회(4시간)	30,000	
	소공연장	1회(4시간)	10,000	
무대음향	대공연장	1회(4시간)	10,000	마이크기본(2개)추가 개당2,000원 무선마이크 개당5,000원
비디오촬영	대공연장	1회	10,000	
영사시설	대공연장	1회	20,000	
기타시설물	연습실 등	1회	개소당 10,000	

하 동 군 공 보

(4) 제 444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운영) ①·② (생 략) <u><신 설></u></p>	<p>제4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u></p>
<p>제8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u>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가 이에 따른 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한다.</u></p> <p>1. ~ 7. (생 략)</p>	<p>제8조(허가의 취소 등) ----- ----- ----- ----- <u><후단 삭제></u></p>
<p>제20조(관람권의 발행) ① <u>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대표용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u></p> <p>③ (생 략)</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20조(관람권의 발행) ① <u>군수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하동문화예술복지회관 이용료 (제9조 관련)				[별표 1] 하동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제9조 관련)									
1. 시설이용료				1. 시설 사용료									
구분		단위	기준	이용료(원)		비고	구분		단위	기준	사용료(원)		비고
시설별				평일	토·일·공휴일		시설별				평일	토·일·공휴일	
2. 부속설비 이용료				2. 부속설비 사용료									
구분	부속설비명	기준	이용료(원)	비고	구분	부속설비명	기준	사용료(원)	비고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90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문학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문학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u>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91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운영 관리) ① (생 략)</p> <p>②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제4조(운영 관리) ① (현행과 같 음)</p> <p>②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92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는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제9조 전단 중 “보통우편”을 각각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제16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를 “군금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 전단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또는 2명 이상의”를 “또는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의 공무원 중”을 “성년자”로,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을 “또는 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 ⑤ (생 략)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u>보통우편</u>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u>보통우편</u>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u>일반우편</u> 송달부) <u>일반우편</u> - ----- <u>일반우편</u> ----- ----- . ----- ----- -----.</p>
<p>제13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u>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u></p>	<p>제13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u>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은 법 제64조에 따른다.</u></p>
<p>② (생 략) 제16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u>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에 예탁(豫託)할 수 있다. 다만, 군금고에 예탁(豫託)할 경우 예탁(豫託)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 제16조(<u>교부금전의 예탁</u>) ① ----- ----- -----<u>군금고</u> ----- -----.</p>
<p>② · ③ (생 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14) 제 444 호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군세를 일시에 <u>징수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u>부과징수하여야 한다</u>.</p>	<p>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 ----- -----<u>징수</u> <u>할 수 있다</u>. ----- ----- -----<u>부과징수 할 수 있</u> <u>다</u>.</p>
<p>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금·유가증권의 <u>공탁수령증</u> 2. 국채·지방채의 <u>등록필증서</u> 3. <u>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u> 4. ~ 6. (생략) <p>② (생략)</p>	<p>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탁영수증</u> 2. -----<u>등록확인증</u> <p><삭 제></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9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u>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u>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9조(수색) ① ----- ----- ----- -----<u>또는 제31조에 따른</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p>	<p>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성년</u> 자 2명 이상 또는 <u>군의 공무원</u>이 나 <u>경찰공무원</u>을 ----- -----.</p>
<p>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 ② (생 략)</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군 게시판에 <u>10일간</u>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1개월간</u> - -----.</p> <p>④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93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산림분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 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심의회 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 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를 “「지방자치법」 제 4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로 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3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32조제2항의 하한을 밑돌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웃돌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18) 제 444 호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제38조 본문 중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를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
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
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제6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
다. 단, 이자율이 영 제81조제1항의 하한을 밑돌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
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웃돌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82조의 하한을 밑돌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웃돌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할 사항은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p> <p>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p> <p>③ 위원 중 1명은 산림분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p> <p>④ 민간위원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⑥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 ~ 3. (생략)</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u>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u> <u>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u>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u>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u> <u>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③ (생략)</p> <p><신 설></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 제7조제3항-----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 -----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p>

하 동 군 공 보

(22) 제 444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u>100분의 10</u>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p>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 <u>100분의 5</u> ----- ----- -----.</p>
<p>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 략)</p> <p>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만원 초과 : 3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p>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하 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 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32조제2항의 하 한을 밑돌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웃돌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u>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u></p>	<p>제38조(조성원가 매각) ----- ----- ----- -<u>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u>----- -----.</p>
<p>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생략)</p> <p>4. <u>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고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인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6. 조1822, 개정 2010.6.30.조1902></u></p> <p>5. (생략)</p>	<p>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p> <p>1. ~ 3.(현행과 같음)</p> <p>4. <u>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 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u></p> <p>5.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24) 제 444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p>② (생략)</p> <p><신설></p>	<p>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81조제1항의 하한을 밑돌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웃돌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p>② (현행과 같음)</p> <p>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82조의 하한을 밑돌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웃돌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94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와 징수) ① 군수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 조립·수리·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95호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훈련·배치 등”을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배치 등”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경력 및 실적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등록)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제16조(등록취소)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활동 수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하였을 경우 2. 자원봉사활동경력증서를 거짓으로 기재, 발급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개인 및 단체가 자원봉사와 관계없는 사업을 추진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품위유지에 손상을 입힐 경우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6조(경력 및 실적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96호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이상의 가축사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 표1과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 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다.

1.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사육을 하는 경우
2.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가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양성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현대 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개축 또는 기존 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 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축사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4조(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양성화) 이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양성화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1항 관련)

1. 주거밀집지역

제한지역	구 분	마리수	거리
주거밀집지역	소·말·양(염소 등 산양 포함)·사슴	400마리 미만	50m
		400마리 이상	70m
	젓소	400마리 미만	75m
		400마리 이상	110m
	돼지·개	1,000마리 미만	400m
		1,000마리~3,000마리 미만	500m
		3,000마리 이상	700m
	닭·오리·메추리	20,000마리 미만	250m
		20,000마리~50,000마리 미만	400m
		50,000마리 이상	600m

< 비 고 >

1. “주거 밀집지역”은 가구간의 거리가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 기준)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3. “마리 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한다.
4. “거리”는 가구로부터 축사예정지까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2.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 련 법	내 용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수변구역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97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를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하동군의”를 “하동군 행정구역의”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 영, 시행규칙 및”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1명 이상 20명”을 “25명 이상 30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제7항제1호라목”을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하 동 군 공 보

(34) 제 444 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의5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놀이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건축허가”로, 같은 조 제7호 중 “제5조제4항제3호”를 “제5조의5제1항제4호”로 같은 항 제8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6조제1항제8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건축물

제6조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
2.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제2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위원회”를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이 조례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군수는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제4항 중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을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려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의결가능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⑧ 심의 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와 심의일이 협의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목 중 “(소위원회)”를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위원회”를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을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은”으로, “소위원회의”를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로, “사항에 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을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제2호 중 “불참한 때”를 “불참한 경우와 그 밖에 직무태만인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손상시킨 때”를 “손상시킨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초래한 때”를 “초래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군수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제2조제1항제11호와 법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 및 작물 재배사
2. 창고
3.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완화기준의 적용방법·신청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건축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하 동 군 공 보

(38) 제 444 호

제13조제4호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에서 제7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제14조6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기존 상위용도에서 하위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7조제6항”을 “제10조제6항”으로, “제8조제6항”을 “제11조제5항”으로, “제7항”을 “제6항”로 한다.

제16조 중 “제11조제2항제3호”를 “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을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5항제14호의 규정”을 “제15조제5항제15호”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가설점포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이고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지상 1층 이하인 가설건축물

제19조제3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 1.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임야 또는 농지에 건축하는 2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
- 2. 공장제작 2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용 저온창고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지정·통보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를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안의 건축물

하 동 군 공 보

(40) 제 444 호

제22조제2항제10호 중 제48조제10호”를 “제4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의 “하천 및 도랑부지”를 “지목이 하천 및 구거 인공부지”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제2호”를 “영 제8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7조를 삭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2미터”를 “1.5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 안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떨어져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떨어져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제29조를 삭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별표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하 동 군 공 보

(42) 제 444 호

[별지 제1호서식]

건축완화 신청서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m ²		
용도	주용도					
건축물의 규모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지하면적	m ²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구 조					공사종류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받고자 하는 규정						
인접건물 및 대지에 미치는 영향						
기 타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하동군 건축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붙임 1. 인접대지 및 건축물 현황도 1부
2. 신청건물 배치도 1부

하 동 군 수 귀 하

[별표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제19조제3항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인수
1천 제곱미터 미만	기술사 0.6인
1천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	기술사 1.0인
3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기술사 1.4인
5천 제곱미터 이상	기술사 2.0인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천원단위이하 절사)

하 동 군 공 보

(44) 제 444 호

[별표3]

대지안의 공지기준(제25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복합용도일 경우 강화기준으로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내에는 지구 단위계획에 따른다.)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3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3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의료시설(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한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복합용도일 경우 강화기준으로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내에는 지구 단위계획에 따른다.)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의료시설(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한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5미터 이상
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 1미터 이상

[별표 4] <개정 2010.6.30.>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및 산정기준(제31조 관련)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1년에 **1회**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되, 총 부과 횟수는 **3회**를 넘지 않는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1.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3 에 해당하는 금액
2.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5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3 에 해당하는 금액
3.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6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3 에 해당하는 금액
4.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3 에 해당하는 금액
5.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3 에 해당하는 금액
6. 유지·관리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35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3 에 해당하는 금액
7.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7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3 에 해당하는 금액
8.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8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3 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9. 피난시설,건축물의 용도,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9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10.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50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11.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12.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1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14.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시공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79조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하 동 군 공 보

(48) 제 444 호

2. 연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되 총 부과 횟수는 5회를 넘지 않는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액
1.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대지 안의 조경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4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건축법</u>」(이하 “법”이라 한다), 「<u>건축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및 「<u>건축법 시행규칙</u>」(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에서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u>(이하 “<u>건축조례</u>”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건축법</u>」, 「<u>건축법 시행령</u>」 및 「<u>건축법 시행규칙</u>」에서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u>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u>시행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하동군의 건축물</u>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하동군 행정구역의 건축물</u>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2장 건축위원회</p>	<p>제2장 건축위원회</p>
<p>제3조(설치) <u>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 영, 시행규칙 및</u> 이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p>	<p>제3조(설치) 「<u>건축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u>건축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u>건축법 시행규칙</u>」(이하 “<u>규칙</u>”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p>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u>11명 이상 20명</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u>제5조제7항제1호라목</u>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 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u>25명 이상 30명</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u>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u>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하 동 군 공 보

(50) 제 444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p>	<p>③ <u>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조경·문화·역사·환경·경관·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6.30.조1900></p>	<p>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u>제5조제4항의 규정</u>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개정 2009.4.15.조1855>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u>놀이 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u>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u>제5조의5제1항</u>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u>건축 허가</u>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7. 영 <u>제5조제4항제3호</u>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영 <u>제5조의5제1항제4호</u>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8.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8. (현행과 같음)
가. <u>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u>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건축물	라. <u><삭 제></u>
9.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10. <신 설></u></p> <p><u>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개정 2009.4.15. 조1855></u></p> <p><u>2. 건축물의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평면의 변경·용도의 변경 및 외장의 변경</u></p> <p><u>3.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의 변경에 한정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u></p>	<p><u>10. 그 밖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건축물</u></p> <p><u>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p><u>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u> <u>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u></p> <p><u>2.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u></p> <p><u>3. <삭 제></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u>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u>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개정 2009.4.15. 조1855></u></p> <p>2. <u>건축물의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평면의 변경·용도의 변경 및 외장의 변경</u></p> <p>3. <u>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의 변경에 한정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u></p> <p>4. <u>공동주택으로서 건축물 동별 층수의 1개층 이내의 변경 및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 이내의 변경</u></p>	<p>② <u>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p>1. <u>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u> <u>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u> <u>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u></p> <p>2. <u>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u></p> <p>3. <u><삭 제></u></p> <p>4. <u><삭 제></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5.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u></p> <p>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사항 중 군수가 <u>소위원회</u>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p> <p>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의장이 된다.</p> <p>②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③ <u>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5. <u><삭 제></u></p> <p>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사항 중 군수가 <u>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u>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p> <p>제7조(회의) ①(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이 조례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군수는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p> <p>③ <u>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를 포함한다.)</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④ 위원장은 <u>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p> <p><u>⑥ <신 설></u></p>	<p>④ 위원장은 <u>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u>⑥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의결가능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⑦ <신 설></p> <p>⑧ <신 설></p> <p>제8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u>소위원회</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u>소위원회</u>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p>③ <u>소위원회</u>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u>소위원회</u>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⑦ <u>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u></p> <p>⑧ <u>심의 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와 심의일이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8조(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u>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u>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u>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p>③ <u>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u>의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u>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u>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행정담당이 된다.</p> <p>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p> <p><u>제9조의2<신 설></u></p>	<p>제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u></p> <p>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5. <u>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u>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u> 2. <u>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u> 3. <u>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u> 4. <u>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u> 5. <u><신 설></u> 	<p>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u>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와 그 밖에 직무태만인 경우</u> 3. <u>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u> 4. <u>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u> 5. <u>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
<p>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건축물의 건축</p>	<p>제11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u>[별지 제1호 서식]</u>에 따른 건축완화신청서</p> <p>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신청인에게 연기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영 제6조제1항의 각 호에서 공공의 이익과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p> <p><신 설></p>	<p>제12조(적용의 완화)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 <u>※[별지 제1호 서식] 일부개정</u></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u>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군수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재축</p> <p>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p> <p>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p> <p>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u>도시계획</u>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p> <p><u><신 설></u></p> <p><u><신 설></u></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u>도시·군 계획시설</u>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p> <p>5. <u>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u></p> <p>6. <u>건축법 시행령 제14조6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기존 상위용도에서 하위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p> <p>① 군수는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조1855></p> <p>② 건축 또는 주택민원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p> <p>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p>	<p><u>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u></p> <p>제14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p> <p>① 군수는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64) 제 444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④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 또는 주택 민원 실무 담당자가 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그 밖의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p>	<p>제15조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4.15.조1855></p>	<p>② (현행과 같음)</p>
<p>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 예치금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5. 조1855></p>	<p>3. (현행과 같음)</p>
<p>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시 보증기간은 사용 승인일까지 또는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건축신고) 영 <u>제11조제2항제3호</u>에 따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주택·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창고는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5.조1855></p>	<p>제16조(건축신고) 영 <u>제11조제3항제3호</u>에 따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주택·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창고는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5.조1855></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재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30.조1900></p>	<p>제17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u>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u>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조185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u>도시계획사업</u>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10.6.30.조1900> 	<p>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u>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u>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u>도시·군계획사업</u>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 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현행과 같음)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 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 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제 2010.6.30.조1900>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 의 규 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 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 정 2010.6.30.조1900>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 에서 건 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 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1. (현행과 같음)
2.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현행과 같음)
3.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 등에 설치 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 조립식 구조인 가설건축물로 써 연면적 30제곱미터미만인 것	3. (현행과 같음)
4.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 는 구조물	4. (현행과 같음)
5. 공장 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저장시설로 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현행과 같음)
6.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로 된 건축물 중 마을공동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7. 30제곱미터 이하의 조립식 또는 경량식구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농어업용 창고, 간이축사 <신설 2009.4.15.조1855, 개정 2010.6.30.조1900></p>	<p>7. (현행과 같음)</p>
<p>8. 3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식 농산물저온저장고 <신설 2009.4.15.조1855, 개정 2010.6.30.조1900></p>	<p>8. (현행과 같음)</p>
<p>9.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촌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휴게시설 <신설 2009.4.15.조1855, 개정 2010.6.30.조1900></p>	<p>9. (현행과 같음)</p>
<p><u>제18조의2<신 설></u></p>	<p><u>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u></p> <p><u>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u></p> <p><u>2. 영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가설점포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이고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지상 1층 이하인 가설건축물</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2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9.4.15.조1855></p> <p>1.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개정 2009.4.15.조1855></p> <p>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개정 2009.4.15.조1855></p> <p>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한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개정 2009.4.15.조1855></p>	<p>제19조 (현행과 같음)</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70) 제 444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군수의 업무를 제1항제 3호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모집 하거나, 하동군 지역 건축사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5.조1855></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u>「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u>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u>의거</u>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9.4.15.조1855></p>	<p>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u>「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u>따라</u>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u>※별표 2 일부개정</u></p>
<p>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u>제19조의2<신 설></u></p>	<p>④ (현행과 같음) <u>제19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u> <u>1.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임야 또는 농지에 건축하는 20제곱미터미만의 농막</u> <u>2. 공장제작 20제곱미터미만의 농림.어업용 저온창고</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p> <p>제20조(건축물의 유지·관리)</p> <p><u>영 제23조제2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u></p> <p><u><신 설></u></p> <p>제2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p> <p>제20조(건축물의 유지·관리)</p> <p><u>①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지정·통보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21조 (현행과 같음)</p> <p>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p> <p>제22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조185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면적(동일한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p>② <u>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u>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안의 건축물</u> 	<p>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p> <p>제22조 (현행과 같음)</p> <p>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p>② <u>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u>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안의 건축물</u>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읍·면지역에서 농·어업용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양어장에 한한다)	3. (현행과 같음)
4. 하천, 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 배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4. (현행과 같음)
5.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5. (현행과 같음)
6.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6. (현행과 같음)
7. 주차전용건축물	7. (현행과 같음)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0.6.30.조1900>	8. (현행과 같음)
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10.6.30.조1900>	9. (현행과 같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련시설 <신설 2010.6.30.조1900>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련시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10.6.30.조1900>	11. (현행과 같음)

하 동 군 공 보

(74) 제 444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u>국토해양부장관</u>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 조경시설 공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조1900></p>	<p>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u>국토교통부장관</u>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 조경시설 공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기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u>국토해양부장관</u>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조1855, 개정 2010.6.30.조1900></p>	<p>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기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u>국토교통부장관</u>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조1855, 개정 2010.6.30.조1900></p>
<p>제22조의2(옥상조경 등 권장) ① 군수는 옥상층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30.조1900></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의3(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2조의3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보행자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도로변에 설치하여야 한다.</p> <p>2. 긴 의자, 파고라, 분수 등 환경친화적이고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p> <p>3.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조도 5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p> <p>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p> <p>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관측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0.6.30.조1900></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3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5.조1855></p>	<p>제23조 (현행과 같음)</p> <p>①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76) 제 444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덮어 씌워진 <u>하천 및 도랑부지</u></p> <p>2.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p> <p>3.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 안 도로</p> <p>4.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p> <p>5.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p>	<p>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덮어 씌워진 <u>지목이 하천 및 구거 인 공공부지</u></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제23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축사·작물 재배사·가축시설·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0.6.30.조1900></p>	<p>제23조의2 (현행과 같음)</p>
<p>제24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4.15.조1855></p> <p>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p> <p>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p> <p>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p> <p>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p>	<p>제23조의2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15.조1855></p>	<p>제25조 (현행과 같음) ※별표 3 일부개정</p>
<p>제26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 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p> <p>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같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이 아닐 것. 2.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10층 이하일 것. 다만 건축물간의 높이차이는 최고 높은 건축물 높이의 3분의 1 이내일 것. 	<p>제26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장 건축물의 높이제한</p> <p>제27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p> <p><u>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지가 2 이상의 앞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도로에 대한 앞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개정 2009.4.15.조1855></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u> 2. <u>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앞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u> 3. <u>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앞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u> <p>② <u>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공원, 광장, 하천 등의 건축이 금지된 곳의 반대쪽 경계선을 앞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본다. <개정 2009.4.15.조1855></u></p>	<p>제6장 건축물의 높이제한</p> <p>제27조 <삭 제></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써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p>제28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써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 제>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신 설></p>	<p>②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 는 다음 각 호과 같다.</p> <p>1.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 안에서 두 동 이 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 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 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 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떨어져 한다.</p> <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 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 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 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 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 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 배) 이상 떨어져 하고, 낮은 건축 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 상 떨어져 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5.조1855></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재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30.조1900></p>	<p>제17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u>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u>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조185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u>도시계획사업</u>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10.6.30.조1900> 	<p>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u>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u>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u>도시·군계획사업</u>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 : 대지면적의 7퍼센트</u></p> <p><u>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조경</u> <u>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u> <u>3. 벤치</u> <u>4. 식수대</u> <u>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u> <p><u>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 제48조(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더하여 1.2배 이하</u> <u>2.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폭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에 더하되 1.2배 이하</u> 	<p><u>제29조 <삭 제></u></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98호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동주택”이라 함은”을 ““공동주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리주체”라 함은”을 ““관리주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마.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하동지역 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하동군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15조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신설한다.

7.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⑥ ~ ⑧ (생략)</p> <p>제16조(심의·조정 대상) 분쟁조정 위원회는 <u>다음</u>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 6. (생략)</p> <p><u><신 설></u></p> <p>7. <u>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제16조(심의·조정 대상) 분쟁조정 위원회는 <u>다음 각 호의</u>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u></p> <p>8. <u>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p>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37호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탁운영의 절차) ①·② (생략)</p> <p>③ <u>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따라 계속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p>	<p>제2조(위탁운영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u></p>

하동군 고시 제2015-86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103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12.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촌길 83-31 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1.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90) 제 444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산354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촌길 83-31	20151112	20070618	서촌이라는 옛지명을 도로 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294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촌길 83-33	20151112	20070618	서촌이라는 옛지명을 도로 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633-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66	20151112	20070618	염등만수 정자 숲의 서쪽 마을에서 유래된 정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56-1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11-2	20151112	20070618	시장이라는 지역 특성에 일 련번호방식의 첫 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1-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50-17	20151112	20070618	연꽃을 상징하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626-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내길 18	20151112	20070618	송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37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신촌길 29-1	20151112	20070618	고이리 법정리명에 신촌마 을명을 합성하여 고이신촌 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42-4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안길 3-2	20151112	20080402	옛날부터 전해온 이름 청룡 안길의 줄임말로 청안길로 명명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산성길 11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산성길 114	20151112	20080402	뒷산에 오래된 산성이 있는 데 이 산성아래 위치한 마을이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산성길 11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산성길 116	20110729	20080402	뒷산에 오래된 산성이 있는 데 이 산성아래 위치한 마을이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하 동 군 공 보

(91) 제 444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냉정길 5-12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냉정길 5-14	20151112	20080402	냉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냉정길 5-12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냉정길 5-12	20110729	20080402	냉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1006-2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서비길 127	20151112	20090302	서촌에서 비파로 이어지는 길로 서비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61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동산길 47-11	20151112	20090302	동산골이라는 옛지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393-3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금오산길 119-65	20151112	20090302	금오산의 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02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도길 81-1	20151112	20090302	내도와 청도의 자연마을 이름을 합성하여 내도청도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545-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섬진강대로 3046-21	20151112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51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56-19	20151112	20110621	평사리란 도로명을 사용하 여 조상의 얼과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평사리길로 명명	

하동군 공고 제2015-944호

하동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11월 1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2. 제안 이유 :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체계적인 업무 추진 및 보조금 집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이나 단체·개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 나. 책무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다. 행사의 위탁, 지원기준 및 절차,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관광실, 전화880-2362, FAX 880-2369, e-mail ljm1472@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 임 : 1. 하동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2015 - 호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하동군 문화 예술 진흥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지역문화”란 하동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 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한 사항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하동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계층별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2.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교류
5. 지역문화예술 단체 등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문화예술단체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을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5-945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이병주 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11월 10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제안이유 : 기존 하동군 이병주 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를 평사리 문학관을 포함한 통합적 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로 개정을 통해 문학관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3. 주요 내용
 - 가. 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다. 문학관의 업무, 운영관리 및 위탁, 관장,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
 - 라. 운영위원회의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관광실, 전화880-2362, FAX 880-2369, e-mail ljm1472@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이병주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나림 이병주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병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를 “문학관 관련 작가 문학정신을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하동군이 설치·운영하는 전시관과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제3호 중 “이병주선생의”를 “문학관 관련 작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학관”을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문학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알맞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병주 선생의”를 “관련 작가”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선정 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중 “이병주문학관”을 “하동군 문학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병주문학관에 대한 운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나립 이병주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병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하동의 주요 문학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하동의 문학적 전통을 전승·발전하기 위하여 하동군이 건립한 문학관의 효율적·체계적인</u> ----- ----- -----.</p>
<p>제2조(위치) <u>문학관은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4-28에 둔다. <다른 조례개정 2012.6.4.조1980></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 이란 <u>이병주문학관과 평사리문학관을 포함하여 하동의 주요 문인들을 기념하고 하동 소재 작품 등을 수집·정리하기 위해 하동군이 설치·운영하는 전시관과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u></p>
<p>제3조(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 2. (생 략) 3. <u>이병주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u> 4. (생 략)</p>	<p>제3조(업무) ----- -----. 1. · 2. (현행과 같음) 3. <u>문학관 관련 작가의</u>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생 략) ② <u>문학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알맞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u></p>	<p>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문학관</u>----- ----- <u>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생 략) 제5조(관장) ① <u>문학관의 자료 수집 · 고증평가 · 유물전시 · 안내, 이병주 선생의 문학성 조사 · 연구 등을 위하여 관장을 둘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 제5조(관장) ① ----- ----- <u>관련 작가</u> ----- -----.</p>
<p>② (생 략)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생 략) ② <u>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 선정 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 선정 할 수 있다.</u></p>
<p>제7조(협약체결 등) ① · ② (생 략) ③ <u>군수는 위탁기간을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이 끝나는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u></p>	<p>제7조(협약체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제20조(명칭) <u>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이병주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p>	<p>제20조(명칭) ----- <u>하동군 문학관</u> ----- -----.</p>

하동군 공고 제2015-955호

토지 보상 계획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진주시소)에서 시행하고 우리군이 수탁보상하는 국도59호선 (하동옥종 ~ 산청시천 미포장도로 정비공사) 에 편입 포함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국도59호선 하동옥종~산청시천 미포장도로 정비공사
- 사업위치 :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산청군 시천면 내공리
- 사업내용 : 도로확 · 포장 연장(L)=3.5km, 폭(B)=5.0~8.0m
- 편입면적 : 79필지 / 56,927㎡, 하동군 33 / 11,388㎡, 산청군 46 / 45,539㎡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진주시소)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지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개별통지 및 열람장소에서 확인)
- 나.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보상시기 : 2015년 11월경 개별통지

3.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및 보상물건조서 열람 → 측량 및 감정평가실시 → 손실보상금 산정및통보 → 손실보상협의

4. 보상금 산정방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의견제출장소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43~2544)

2015년 11월 13일

하 동 군 수

하 동 군 공 보

(102) 제 444 호

편 입 토 지 조 서

○공시명 : 국도59호선 하동 옥중-산경 시천 미포잠도로경비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	위태리	797-3	797-4	도		91	61	1	김국숙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78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45-14	김정일 황경자 유재윤	등)마산시 중성동 12-7 등)진주시 하대동 313-1 등)진주시 금곡면 송곡리 254	권리자 근저당권자
12	위태리	803-3	803-3	도		46	46	1	하상경	창원시 시파동 97층력 9호트 삼익아파트 208동 507호 (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연로 11, 201동 1304호 (연지동, 연지지대2차아파트)			
15	위태리	804	804-3	전		68	17	1	서학열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696-1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31			
16	위태리	805	805-7	전		609	49	1	서학열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696-1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31	하동군산림조합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18	근저당권자
17	위태리	806	806-5	전		407	4	1	하상석	부산 동구 수정동 1177-9 (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곡남로 15, 101동 2102호 (연산동, 연산동대우아파트)			
19	위태리	815-4	815-4	도		116	116	1	양지환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36			
23	위태리	산69-2	산69-4	임		355	4	1	경규화	경기도 시흥시 포읍 당리 567 현)광일시 대방동355성일3차(8909동106호(43동1번))	광일시	광일시(정수13410-340)	임유자
29	위태리	산69-1	산69-1	도		145	145	1	경규화	경기도 시흥시 포읍 당리 567 현)광일시 대방동355성일3차(8909동106호(43동1번))	광일시	광일시(정수13410-340)	임유자
32	위태리	산75-4	산75-8	임		2,275	1,344	1	김국숙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78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45-14	황경자 김경기 유재윤	등)진주시 하대동 313-1 등)진주시 강남동178-2 등)진주시 금곡면 송곡리 254	근저당권자
38	위태리	831	831	전		60	60	1	양충익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44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26			
34	위태리	828	828-5	전		636	365	1	양충익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44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26			
35	위태리		산74-3	임		3,926	103	1	양충익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44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26			
35-1	위태리	산74-2	산74-4	임			97	1	양충익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44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2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6	위태리		산75-6	도		7,018	828	1	김국숙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78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45-14	황경자 김경기 유재윤	등)진주시 하대동 313-1 등)진주시 강남동178-2 등)진주시 금곡면 송곡리 254	근저당권자
36-1	위태리		산75-3	도			806	1	김국숙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78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45-14	황경자 김경기 유재윤	등)진주시 하대동 313-1 등)진주시 강남동178-2 등)진주시 금곡면 송곡리 254	근저당권자
41	위태리	산62-1	산62-4	도		1,375	337	1	위성량	순천시 용당동 317-2 (우) 순천시 서면 강경길 80, 204동 807호(주공아파트)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주식회사광양상호신용금고 국(순천사무서, 정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전남지사) 순천시 덕암동 222-19 (우) 순천시 풍덕주역3길 17(풍덕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3-8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08 순천사무서(만류 정세 46100-782) 서울 종로구 연지동136-74(순천지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450(역삼동)	근저당권자
42	위태리	산62임	산62-2	임		33,832	2,792	1	위성량	순천시 용당동 317-2 (우) 순천시 서면 강경길 80, 204동 807호(주공아파트)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주식회사광양상호신용금고 국(순천시, 순천사무서, 세무, 정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전남지사) 순천시 덕암동 222-19 (우) 순천시 풍덕주역3길 17(풍덕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3-8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08 순천사무서(만류 정세 46100-782) 서울 종로구 연지동136-74(순천지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450(역삼동)	근저당권자
44	위태리	782	782-1	전		35	1	1	신미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359, 104동 801호 (용원동, 일신남아파트)			
45	위태리		789-5	전		1,372	1	1	신미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359, 104동 801호 (용원동, 일신남아파트)			
46-1	위태리		789-6	전			34	1	신미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359, 104동 801호 (용원동, 일신남아파트)			
49	위태리	794	794-4	목		583	7	1	서학열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696-1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31			
53	위태리	806-4	806-6	전		1,358	5	1	하상석	부산 동구 수정동 1177-9 (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곡남로 15, 101동 2102호 (연산동, 연산동대우아파트)			

하 동 군 공 보

(103) 제 444 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8	위태리	378-3	378-10	전		1,113	4	1	이상진	진주시 옥봉동 377-14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30-28			
60	위태리	378-7	378-11	전		175	13	1	경상재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444-1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388			
61	위태리	378-5	378-5	도		78	78	1	하상경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43 (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연로 11, 201동 1304호 (면지동, 면지지이2차아파트)			
63	위태리	378-2	378-9	전		930	99	1	하상경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43 (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연로 11, 201동 1304호 (면지동, 면지지이2차아파트)			
64	위태리	815	815-5	전		980	124	1	양재수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43 (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연로 11, 201동 1304호 (면지동, 면지지이2차아파트)			
67	위태리	817	817-3	전		1,946	119	1	양재수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43 (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연로 11, 201동 1304호 (면지동, 면지지이2차아파트)			
70	위태리	821	821-2	전		490	136	1	하상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15 문래연립 비동 102호 (우)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쉼골로 1724번길 34			
71	위태리	828-4	828-6	전		38	30	1	양충익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44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26			
72	위태리	산69	산69-3	임		8,227	68	1	정규화	경기도 시흥시 포읍 당리 567 현)광원시 대방동355성원3차 6809동106호(43동1번)			
75	위태리		산61-1	임		11,901	5,132	1	양재찬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43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24			
75-1	위태리	산61임	산61-2	임			112	1	양재찬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43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24			
75-2	위태리		산61-4	임			65	1	양재찬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43 (우) 하동군 옥중면 돌고지로 1424			
76	위태리	산60임	산60-2	임		15,372	74	1	조상선	미등기 토지 미등기토지(분할등기제외)			
78	위태리	789-4	789-7	전		116	3	1	양재호	하동군 옥중면 위태리 784			
	소계	40필지											

의 견 서

1. 제 목		국도59호선 하동옥중~산청시천 미포장도로 정비공사
2.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5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5-955호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11 월 13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2.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이월예산의 요구·확정시기를 단축하고,
- 이월에 따른 이월장부정리 마감일을 조정하여 집행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예산이월 확정 및 장부마감 기한 조정
 - 이월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이월요구서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제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확정
 - 이월장부정리 마감일 조정(기존 4월1일 → 2월10일)
- 서식 정비
 -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매일 공개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 및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 서식) 개정
 - 가상계좌를 통한 지출금 반납 고지서(별지 제31-1호) 신설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2월 03일까지 하동군 재무과(전화055-880-2285, FAX 055-880-2279, e-mail : sinja5297@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을 “10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4월 1일”을 “2월 10일”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08) 제 444 호

<별지 제31-1호서식>

< 별지 제31-1호서식 >

고 지 서		반 납 고 지 서				영 수 증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년도	회계	년도	회계	년도	회계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x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x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x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x
(조직)		(조직)				(조직)	
(정책)	(단위)	(정책)	(단위)	(정책)	(단위)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세 부)	(통계목)	(세 부)	(통계목)	(세 부)	(통계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금고 원				금고 원	
지출원 성명 ㉠		(반납자) 성명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	xx은행	xxxx-xx-xxxxxxx	xx은행	xxxx-xx-xxxxxxx	xx은행	xxxx-xx-xxxxxxx
(반납자)	귀하	지출원 귀하				(반납자)	귀하
<작성요령> 주서로 기재 <신설 15-9-15>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2호 서식> <개정 15-9-15>

자 금 운 용 기 록 부

연월일	적요	기관명	지					환					잔액	비고
			정기 예금	MMDA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1)	정기 예금	MMDA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2)		

<기재요령> 비교란에는 환입여부를 표시

하 동 군 공 보

(110) 제 444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u>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제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u>30일</u>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 ----- , ----- <u>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u> ----- .</p> <p>②----- ----- , ----- <u>10일</u> ----- , ----- .</p>
<p>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p> <p>①·③ (생략)</p> <p>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4월 1일까지</u>로 한다.</p>	<p>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②----- ----- <u>2월 10일</u>----- .</p>
<p>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 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p> <p><u><후단 신설></u></p>	<p>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 . <u>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③ <u>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u> ④ <u>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③

하 동 군 공 보

(112) 제 444 호

서식 정비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31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반 납 고 지 서</p> <p style="text-align: center;">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년도 회계</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년도 회계</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년도 회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지번호 20xx-xxxxxx-xxxxxx</td> <td style="text-align: center;">고지번호 20xx-xxxxxx-xxxxxx</td> <td style="text-align: center;">고지번호 20xx-xxxxxx-xxxxxx</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조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책)</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세 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통계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세 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편성목)</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통계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금 원(금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금 원(금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금 원(금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년 월 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년 월 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출원 성명 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반납자) 성명 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반납자) 성명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출금 반납 입금계좌</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출금 반납 입금계좌</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출금 반납 입금계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xx은행 xxxxx-xx-xxxxxxxx</td> <td style="text-align: center;">xx은행 xxxxx-xx-xxxxxxxx</td> <td style="text-align: center;">xx은행 xxxxx-xx-xxxxxxx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납자) 귀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출원 귀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반납자) 귀하</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각성요령> 주서로 기재</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 15915></p>	년도 회계	년도 회계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	(조직)			(정책)	(단위)	(정책)	(세 부)	(통계목)	(세 부)	(편성목)		(통계목)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성명 인	(반납자) 성명 인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x	xx은행 xxxxx-xx-xxxxxxxx	xx은행 xxxxx-xx-xxxxxxxx	(반납자) 귀하	지출원 귀하	(반납자) 귀하
년도 회계	년도 회계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																																			
(조직)																																					
(정책)	(단위)	(정책)																																			
(세 부)	(통계목)	(세 부)																																			
(편성목)		(통계목)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성명 인	(반납자) 성명 인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x	xx은행 xxxxx-xx-xxxxxxxx	xx은행 xxxxx-xx-xxxxxxxx																																			
(반납자) 귀하	지출원 귀하	(반납자) 귀하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자 금 운 용 기 록 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10%;">연월일</td> <td style="width: 10%;">필요 기관명</td> <td style="width: 10%;">장기 예금</td> <td style="width: 10%;">통저 예금</td> <td style="width: 10%;">기타 예금</td> <td style="width: 10%;">잔인 또는 대어</td> <td style="width: 10%;">계 (1)</td> <td style="width: 10%;">장기 예금</td> <td style="width: 10%;">통저 예금</td> <td style="width: 10%;">기타 예금</td> <td style="width: 10%;">잔인 또는 대어</td> <td style="width: 10%;">계 (2)</td> <td style="width: 10%;">잔액 비교</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62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기계요령> 비교란에는 잔입여부를 표시</p>	연월일	필요 기관명	장기 예금	통저 예금	기타 예금	잔인 또는 대어	계 (1)	장기 예금	통저 예금	기타 예금	잔인 또는 대어	계 (2)	잔액 비교														<p style="text-align: center;">자 금 운 용 기 록 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10%;">연월일</td> <td style="width: 10%;">필요 기관명</td> <td style="width: 10%;">장기 예금</td> <td style="width: 10%;">MMDA</td> <td style="width: 10%;">기타 예금</td> <td style="width: 10%;">잔인 또는 대어</td> <td style="width: 10%;">계 (1)</td> <td style="width: 10%;">MMDA</td> <td style="width: 10%;">기타 예금</td> <td style="width: 10%;">잔인 또는 대어</td> <td style="width: 10%;">계 (2)</td> <td style="width: 10%;">잔액 비교</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62호 서식> <개정 15915></p> <p style="text-align: center;"><기계요령> 비교란에는 동일여부를 표시</p>	연월일	필요 기관명	장기 예금	MMDA	기타 예금	잔인 또는 대어	계 (1)	MMDA	기타 예금	잔인 또는 대어	계 (2)	잔액 비교												
연월일	필요 기관명	장기 예금	통저 예금	기타 예금	잔인 또는 대어	계 (1)	장기 예금	통저 예금	기타 예금	잔인 또는 대어	계 (2)	잔액 비교																																							
연월일	필요 기관명	장기 예금	MMDA	기타 예금	잔인 또는 대어	계 (1)	MMDA	기타 예금	잔인 또는 대어	계 (2)	잔액 비교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1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별지 제81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회계별	일계	세 입				자 배 정	세 출				잔 액		회계별	일계	세 입				자 배 정	세 출				잔 액											
		수입액	과오나 반환액	과목경정액	과목경정액	②	지급액	반환액	과목경정액	차액	①-②-③+④			수입액	과오나 반환액	과목경정액	과목경정액	차액	①	②	③	④	⑤			수입액	과오나 반환액	과목경정액	과목경정액	차액	①	②	③	④	⑤
	일계																																		
	누계																																		
자 금 운 용										자 금 운 용																									
예금등 ⑤					환 입 ⑥		공급잔액(④-⑤+⑥)			비 고		예금등 ⑥					환 입 ⑦		공급잔액(⑤-⑥+⑦)			비 고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지출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지출원																									
<유의사항> 금고에서는 지출원으로부터 통상(송금, 집합)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미지급금으로 취급										<유의사항> 금고에서는 지출원으로부터 통상(송금, 집합)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미지급금으로 취급																									
										<개정 15-9-15>																									

하동군 공고 제 2015-936호

하동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재해위험 경감을 극대화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안 제6조)
- 침수위험지역 등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안 제7조)
- 붕괴위험지역 등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안 제8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1월 7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055-880-2254, FAX 055-880-2249, e-mail)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동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대책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과 이전 및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홍수 방어벽 설치,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홍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말한다.
9. “행위자”란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행위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위자가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건축 및 형질변경 행위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①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누구나 해당 지역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에는 해당 지역이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고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해당 지역이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고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행위자는 침수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우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성토 및 정지 작업 등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행위자는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 위험이 있는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까지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의 공공시설물 우선 정비) 군수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공공시설물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자연재해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yellow;"> <p>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하동군청 (055-880-2251) 하 동 군 수</p> </div> </div> </div> <div style="margin-top: 20px; 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margin-top: 20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left;"> <p>침수위선(적색) →</p> <p>침수흔적(청색 삼각형)</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문자로 침수위선 표기</p> <p>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참조)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 하동군청 (055-880-2251) 하 동 군 수</p> </div>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중앙부처에서 자치법규에 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인용 법령의 제명 수정(안 제2조)
 - 「대통령령」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수정
 - 이자 부담비율 결정을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 이자율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8조)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별지 제1호서식)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2월 3일까지 하동군(참조 : 농축산과, 전화880-2673, FAX 880-2419, gabi0817@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대통령령」”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통령령」”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이자율 결정) 융자금 이자보조 이율은 군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집) 번호 (휴대폰)	
	주 소					
사 업 분 야	영 농 경 력		영농교육 이수실적	·과정명 : / 시간		
	사 업 대 상 지		사업내용		사 업 규 모	
신 청 내 용	사 업 대 상 지	군 읍·면 번지	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원)	계	용 자		자부담		

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하 동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 1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발행)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1호 (생 략)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 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p> <p>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 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 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p>	<p>제2조(정의) 1호 (생 략) 가. 농업인 : ----- ----- 『농어업·농어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p> <p>나. 어업인 : ----- ----- -----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시행령』 ----- -----</p>
<p>제8조(이자 부담비율 결정) 융자금 에 대한 이자는 군과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단 부담비율은 군과 금 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p>	<p>제8조(이자율 결정) 융자금 이자 보조 비율은 군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p>